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7.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7.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후환경과장)
- 제출일자: 2024. 7. 5.
- 회부일자: 2024. 7. 5.
- 검토기간: 2024. 7. 5. ~ 2024. 7. 9.(5일간)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항 신설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제4조)
- 잉여금 활용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의2)
- 회계에 관한 준용(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의2
 -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입법예고(2024. 5. 1. ~ 5. 21.): 의견없음
-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비용추계서: 비해당
-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본 조례안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단, 일부조항은 용어, 문구, 체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가 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 시설세 중 달서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② “시 자체사업”이란 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달서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2.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관련 홍보·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

④ <생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략>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 2. 20.>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생략>

③ <생략>

[시행일: 2024. 4. 1.] 제29조의2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다. <생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생략>

나. <생략>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이하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12. 31., 2021. 12. 28.>

1. <생략>

2. <생략>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0.3원 ⇒ 0.6원)
시행: 2024. 1. 1.(개정: 2023. 12. 29.)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① <생략>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12. 31.>

1. <생략>

2. <생략>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이하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 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 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구청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